



제 14 장

법조인 양성제도





제14장 법조인 양성제도

1. 법조인 양성제도의 연혁¹⁶

가. 법관양성소(1895년~1909년)

1) 개요

1895년 3월 25일 고종이 반포한 칙령 제49호인 「법관양성소규정」에 따라 당시 법원인 평리원 안에 설치한 대한제국의 법부 산하 국립 교육 기관으로, 소장은 법부 참서관이 담당하였다. 「법관양성소규정」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자격, 교과목 및 교과시간표 등을 규정하였다.

(1) 설치 배경 및 목적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되면서 서구 법학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근대식 사법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전임법관의 양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같은 해(1895년) 공포·시행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행정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런 배경 아래 전문적인 근대 법학 교육을 통한 법관 양성을 목적으로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어 근대 사법제도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2) 교육 대상 및 과정

① 대상

- 20세 이상으로 소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 *입학시험과목 : 한문작문, 국문작문, 조선역사 및 지지대요(地誌大要)
- 관공서의 현직 관리

② 과정

- 기간 : 초기에는 6개월이었으나 1년 6개월, 2년, 3년 순으로 연장됨.
- 과목 : 법학통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타 현행 법률 및 연습과목

¹⁶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2) 주요 연혁

1894.12.16.	법무아문에서 법률학교 설치 건의
1895.03.25.	을미개혁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 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규정」 공포 및 설립
1895.05.17.	첫 강의
1895.11.10.	제1회 졸업생 47명 배출
1896.04.22.	제2회 졸업생 38명 배출
1903.01.22.	「법관양성소규정」 개정(수업 연한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1904.07.	제3회 졸업생 25명 배출
1906.01.	제4회 졸업생 20명 배출
1908.01.	제5회 졸업생 22명 배출
1908.01.17.	법부령 제1호로 「법관양성소령」 공포
1908.03.05.	법부고시 제1호로 「법관양성소학칙」 공포
1908.12.27.	제6회 졸업생 54명 배출
1909.10.28.	칙령 제48호로 「법학교관제」 공포
1909.10.말	법관양성소 폐지

3) 폐지 이후

국립으로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1909년 폐소되었으나, 이후 법령에 의하여 법학교, 1911년에 경성전수 학교, 192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변경·개설되었고, 1926년부터는 새롭게 개설된 경성제대 법문학 부와 병존하였다. 그 후 두 학교는 8.15 광복 후인 19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승계·발전 되어 현재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 사법관시보(1919년~1961년)

1) 개 요

1913년 4월 5일에 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는 일본 사법관시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독부 사법관시보를 임명하게 하고, 총독이 정하는 수습 및 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독부 재판소 및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제도였는데, 이로써 조선과 일본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기본 제도가 동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제령 제4호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을 개정하여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를 마친 자를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에 임명하였으나, 보직을 줄 만한 자리가 없을 때는 자리가 날 때까지 이들을 예비판사 또는 예비검사로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청 또는 그 검사국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법관시보 제도는 해방 후에도 동일한 명칭 하에 유사한 내용으로 상당 기간 존속되었다.

2) 운 영

1949년 9월 26일에 공포된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자격의 하나로서 사법관시보로 수습하고 고시에 합격한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사법관시보에 관하여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은 앞서와 같이 사법관시보로 임명될 수 있었고, 1949년 12월 15일 대통령령으로 「사법관시보의 임명, 수습 및 고시 규정」이 공포되어 사법관시보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사법관시보가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검찰청에서 검찰사무를 수습하도록 하였는데 수습기간은 법원과 검찰청을 합하여 1년으로 하였고, 검찰사무는 4개월, 민·형사의 재판사무는 8개월간 수습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협의에 의하여 수습순서를 변경할 수 있었다.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실무수습 중인 사법관시보의 지휘감독관이 되었고, 소관 사무의 실무수습과 시보의 지도를 위하여 시보별로 지도관을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소속 판사와 검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다. 시보의 수습성과 직무 내외의 행실, 기타 참고사항을 수습기간 만료 전에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도록 하였고, 시보들은 매월 말 수습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시보들은 수습 중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재판이나 등기사무를 행할 수 없었다.

시보수습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실무고시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때 판사나 검사의 직에 대한 희망을 표시할 수 있었다. 실무고시는 필기와 구술의 2종으로서, 필기는 소송기록에 의한 기소나 불기소 처분안, 민·형사 판결안을 작성하게 하고, 구술은 민사, 형사, 검찰의 실무에 관하여 실무수습의 정도를 시험하였다. 합격 여부는 수습성과 실무고시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였는데,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6개월 동안 수습한 후에 수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무고시는 법무부에 설치된 사법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에서 관장하였는데,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었다. 위원은 대법관, 판사, 검사,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였다.

3) 폐 지

그 후 1962년 4월 3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자격이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1970년 11월 30일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사법연수원이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원생의 수습과 함께 법원 직원의 훈련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게 되면서, 종전의 「사법관시보의 임명, 수습, 고시에 관한 규칙」, 「사법관시보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모두 폐지되었다.

다. 변호사시보(1936년~1961년)

1) 개 요

1936년 4월 17일 제령 제4호로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 시행된 「조선변호사령」은 제2조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하였는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조선변호사시보로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받고 고시에 합격한 자,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총독의 인가를 받고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그것이다. 이전까지는 「조선총독부변호사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별도 시험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나, 1933년 동 규칙의 모법인 일본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시행된 「조선변호사령」은 기존 사법관시보 제도와 함께 변호사시보 제도를 도입, 변호사 또한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고시에 합격하여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변호사시보의 수습은 변호사로서 필요한 품성의 함양 및 실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여 경성지방법원 관내의 변호사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는바, 당해 변호사회는 그 소속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시보의 수습을 지도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습기간 중 그와 함께 재판소 출정, 소송절차 견학,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서류의 입안 기타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를 변호사시보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시보의 행상(行狀), 성적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고사표에 기재하여 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변호사회는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였다. 실무수습 후 변호사시보고시는 경성에서 실시하였는바, 동 고시는 변호사시보의 실무 습득의 정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필기 및 구술의 시험을 행하고 또 수습의 실적 기타의 자료에 기하여 변호사시보의 성적을 합산,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 제도 또한 사법관시보 제도와 함께 해방 후에도 동일한 명칭 하에 유사한 내용으로 상당 기간 존속되었다.

2) 운 영

해방 후 미군정 기간인 1948년 2월 12일 군정법률 제7호로 「변호사시보에 관한 건」이 제정되었다. 본 영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기타 변호사시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년 이상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변호사사무소에서 만 6개월간 실무를 수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수습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고(변호사시보 성적 및 평가표 제출처 사법부로 변경), 변호사시보 고시 실시를 위하여 ‘변호사시보고시위원회’를 조직, 동 위원회 위원 과반수로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후 1949년 11월 7일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시보’라는 명칭이 ‘수습 변호사’로 변경되고 그 실무수습기간도 1년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1955년 7월 1일 「수습변호사의 등록·수습 및 고시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 시행처가 지방변호사회로 규정되면서 실무수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3) 폐 지

1962년 4월 3일 「법원조직법」 및 「변호사법」 개정으로 판·검사 임용 및 변호사 자격이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로 변경되었다. 또한 1970년 11월 30일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사법연수원이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원생의 수습과 함께 법원 직원의 훈련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게 되면서 종전의 변호사시보 관련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다.

라. 사법대학원(1962년~1970년)

1) 설 치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455호 「국립학교설치령 중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같은 날 새로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이 설치되었으며, 초대 대학원장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던 유기천 교수가 임명되었다. 1962년 4월 2일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 50명 가운데 42명이 제1기생으로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였고, 42명의 입학생 중 41명이 1963년 8월 26일 수료식을 가졌다. 같은 해 4월 3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종전에 ‘사법관시보로 1년 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정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한 자’ 로 개정하였다. 1963년 5월 9일에는 각령으로 「사법시험령」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18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로 규정하였다.

한편, 1962년 5월 25일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은 사법대학원 학생을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구분하면서 모두 기숙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사법대학원의 학생 가운데 판사, 검사,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국비생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비생으로 한 것이었다.

2) 운 영

사법대학원 과정은 학칙으로 정해졌는데, 제1조에서 ‘본 대학원은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지도함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구비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여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중 학사학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논문이 통과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정원은 200명 이하로 정해졌다.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5학점으로 하고 교과목으로는 민사연습, 형사연습, 공법연습, 외국판례 연구, 법과 문화, 증거법, 사실인정법, 한국경제, 법의학, 국제관계, 세법, 현대논리학, 현대심리학, 회계학 등이 있었다. 또한, 실무수습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실무수습의 학점은 민사수습 5학점, 형사수습 3학점, 검찰수습 2학점, 변호사 수습 1학점으로 하며, 법원에서 3개월간의 형사실무와 5개월간의 민사실무를, 검찰청에서 2개월간의 검찰실무를, 법률사무소에서 1개월간의 변호사실무를 수습하였다.

사법대학원의 발족은 미국의 로스쿨과 영국의 인스오브코트(Inns of Court) 법학원 등을 참고하여 5.16 혁명 후의 새로운 법조교육을 시도하였으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처음 사법대학원 전원을 기숙사에 입주시키는 등 의욕에 찬 출발을 보였으나 법조 실무교육을 법조인이 하여야 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1970년 10기생을 끝으로 11기생은 사법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 법조의 전통이나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사법연수원

가. 설립배경

1963년 8월경 서울제일변호사회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 주관하의 법조 실무수습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1965년 2월 사법대학원생 50여 명이 모임을 갖고 사법대학원을 대법원에 이관시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또한 1969년 12월경에는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사법연수원을 대법원에 둔다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여러 견해를 수렴하여 1970년 8월 7일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222호)을 통해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두는 것을 규정하여, 1971년 1월 1일 사법연수원이 개원하게 되었고 같은 달 7일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자격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필한 자'로 규정되었고, 종전의 사법대학원생은 사법연수원생으로 보고 사법대학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기능하였으나, 2009년부터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2017년까지 종래의 사법시험이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연수원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한시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나. 운 영

(1) 업무

- ① 사법연수생의 수습
- ② 법관의 연수
- ③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교육

* 사법보좌관은 2005년 법원조직법 규정의 정비와 함께 시행된 제도로써, 재판과 실질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부수적 업무와 공중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법원의 경력직원에게 위임하여 법원의 업무 폭증에 따른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 수습 및 연수의 목적

- ① 사법연수생의 수습 : 법조인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높이며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
를 연구, 습득함을 목적으로 함.
- ② 법관의 연수 : 법관으로서의 품격 향상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 ③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교육 :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④ 위탁교육 :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
탁교육을 실시함.

(3) 대상

- ① 사법연수생
- ②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
- ③ 법관
- ④ 대법원장의 연수명령을 받은 판사 및 예비판사
- ⑤ 사법보좌관 후보자
- ⑥ 대법원장의 교육명령을 받은 법원사무관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

가. 도입이유

지난 2009년 3월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인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설치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교원

- ① 전임교원 대 학생비율 1:12 이하
- ② 전임교원 중 실무경력교원 비율 20% 이상

③ 여성교수 및 교원 출신대학의 다양성

(2) 교육과정

- ① 다양한 특성화,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 ② 법조윤리 등 필수 실무교과목의 확보 등
- ③ 연구소의 설치

(3)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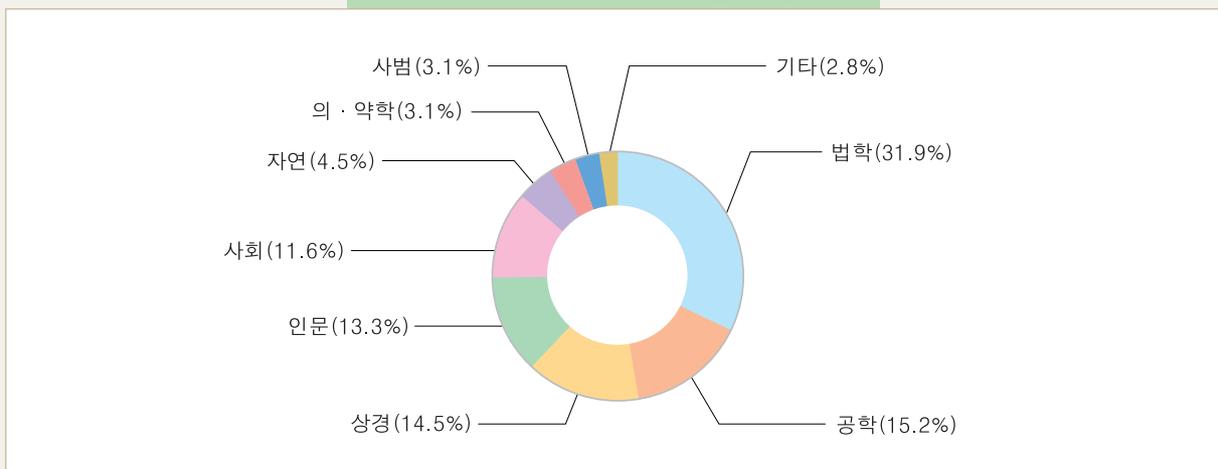
- ①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대형 강의 공간
- ② 학생지도센터, 육아시설, 컴퓨터Lab 등

(4) 장학제도의 확충

(5) 입학자 선발

- ①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어학성적 등
- ② 다양한 전공출신(법률은 법학 외 분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 학사출신 비율을 각각 1/3 이상으로 정함)

2009년 입학자 학부 전공 현황



다.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1) 정원 및 교원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설치인가 당시 각 대학원별 전임교원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09년 말 기준 / 총 25개교 2,000명]

연번	학교명	정원		전임교원 현황		교원1인당 학생수 (편제완성연도 기준)
		입학정원	편제정원	인가 시	편제완성연도	
1	강원대	40	120	24	24	5.0
2	건국대	40	120	31	32	3.9
3	경북대	120	360	34	37	10.6
4	경희대	60	180	32	32	5.6
5	고려대	120	360	50	53	7.2
6	동아대	80	240	31	31	7.7
7	부산대	120	360	39	41	9.2
8	서강대	40	120	23	25	5.2
9	서울대	150	450	54	57	8.3
10	서울시립대	50	150	23	26	6.5
11	성균관대	120	360	42	45	8.6
12	아주대	50	150	29	32	5.2
13	연세대	120	360	47	48	7.7
14	영남대	70	210	31	31	6.8
15	원광대	60	180	29	35	6.2
16	이화여대	100	300	37	38	8.1
17	인하대	50	150	33	39	4.5
18	전남대	120	360	37	45	9.7
19	전북대	80	240	33	36	7.3
20	제주대	40	120	24	27	5.0
21	중앙대	50	150	31	34	4.8
22	충남대	100	300	31	35	9.7
23	충북대	70	210	27	30	7.8
24	한국외대	50	150	28	31	5.4
25	한양대	100	300	48	48	6.3
합계		2,000	6,000	848	912	6.6

【출처】 「법조인 양성체제의 개혁」, 교육과학기술부, 2009

2)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화 분야 현황]

대학명	특성화 분야	대학명	특성화 분야
강원대	환경	영남대	공익·인권
건국대	부동산 관련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경북대	IT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전남대	공익·인권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전북대	동북아법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제주대	국제법무
서강대	기업법(세부특성화: 금융법)	중앙대	문화법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충남대	지적재산권
서울시립대	조세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 양성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한양대	국제소송, 지식·문화산업, 공익·소수자 인권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의료·과학기술, 글로벌비즈니스		

3) 변호사 자격 교원의 수와 담당과목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국내 변호사) 교원 현황]

[2009년 말 기준]

대학명	전임/겸임	담당과목
강원대	6/10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세법, 노동법, 영미법, 환경법, 국제거래법
건국대	10/5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세법, 경제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외국법
경북대	9/19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연습, 행정소송 실무, IT법, ADR실무, 특허소송·특허심판, 비교사법, 부동산사법, 환경법, 젠더와 법, 국제사법, 기술이전과 Licensing 실무, 국제형사법, IT국제거래와 WTO/TRIPs 실무
경희대	7/0	민법, 형법, 상법, 조세법, 행정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실무, 상사법 실무, 법철학, 의료법
고려대	9/11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실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실무,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금융법, 노동법, 엔터테인먼트법,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세법실무
동아대	7/10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부산대	11/22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회사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법조윤리, 국제법, 영미법, 지적재산권법, 해상법, 법문서 작성
서강대	6/9	민법, 행정법, 상법, 경제법, 세법 실무, 국제금융법
서울대	13/7	헌법, 민법, 형사법, 행정법, 상법, 공법, 상법, 국제투자법, 국제금융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지적재산권법, 도산법
서울시립대	6/0	상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형사법, 민법, 지적재산권법,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노동법
성균관대	15/7	상법, 금융법, 민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과학기술법, 조세법, 증권법,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중국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절차법, 기업범죄
아주대	8/6	민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업법, 공법, 세법
연세대	11/3	민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조세법, 지적재산권, M&A, 법조실무
영남대	6/0	민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원광대	7/0	법조실무
이화여대	7/8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국제거래법, 법률실무
인하대	7/8	헌법, 민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물류법, 법여성학
전남대	8/18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법문서 작성
전북대	5/0	행정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법률실무
제주대	4/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익·인권법, 법조실무
중앙대	6/4	민법, 형법, 상법, 세법, 법조실무, 민법연습, 문화예술법, 영상미디어법 실무, 민사변호사실무, 현대사회와 법
충남대	9/1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실무소송법, 지적재산권법, 행정쟁송법
충북대	5/2	법조실무
한국외대	5/2	민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국법, 국제금융법, 지적재산권법
한양대	10/0	민사소송법 실무,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인권법, 형사법, 헌법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4) 실무관련 과목의 운용실태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과목 현황]

[2010년 기준]

대학명	과목명		개설 학년-학기	인정학점	비고
강원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2-0	
		법문서작성	1-2	1-0-2	
		법조윤리	2-1	1-2-0	
		모의재판	2-2	1-0-2	
		엑스텐션쉽	3-2	1-0-2	
	선택	로여링	2-1	1-2-0	
건국대	필수	법률정보조사론	1-1	1	
		법문서작성1	1-2	1	
		법조윤리	2-1	1	
		실무수습	2-2	1	
		모의재판	3-1	1	
	선택	Legal Research & Writing	1-2	2	
		법문서작성2	2-2	2	
		검찰실무1	2-2	2	
		법원실무1(형사)	2-2	2	
		리걸클리닉	2-2	1	
		검찰실무2	3-1	2	
		법원실무(민사)	3-1	2	
		법률사무경영론	3-2	2	
		일본법정보조사론	3-2	3	
경북대	필수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	2-1	2	
		모의재판	3-1	1	
		실습과정	3-2	1	
	선택	검찰실무1	2-2	2	
		검찰실무2	3-1	2	
		채권구제실무	3-1	3	
		민사계약실무	3-1	3	
		M&A와 기업금융실무	3-1	2	
		기술이전과 Licensing 실무	3-1	3	
		헌법재판실무	3-2	2	
		행정소송실무	3-2	2	
		가족법실무	3-2	3	
		소유권분쟁실무	3-2	3	
		손해배상실무	3-2	3	
		ADR실무	3-2	3	
		민사소송실무	3-2	3	
		형사재판실무	3-2	3	
		재산범죄실무	3-2	3	
		국제거래실무	3-2	2	
		인권구제실무	3-2	3	
노동쟁송실무	3-2	2			
IT국제거래와 WTO/TRIPs 실무	3-2	2			

대학명	과목명		개설 학년-학기	인정학점	비고
경희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	
		법문서작성	1-2	1	
		법조윤리	2-1	2	
		모의재판	3-1	1	
		실습과정1	1-상시	1	
	선택	민사변호사실무	3-1	2	
		공법변호사실무	2-2	2	
		Legal Research & Writing in English (외국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2-2	2	
		행정법종합실무	3-1	2	
		형사변호사실무	3-1	2	
		Moot Court in English(영어 모의재판)	3-1	2	
		International Negotiations(국제협상론)	3-1	2	
		민사종합실무	3-1	3	
		민상법종합실무	3-2	3	
		상사중재법과 실무	3-2	2	
		공법종합실무	3-2	3	
		형사종합실무	3-2	3	
		가사소송실무	3-2	2	
		International Contracts Practicum (국제계약문서 작성실무)	3-2	2	
		실습과정2	2-1	1	
형사재판실무	2-2	2			
민사재판실무	3-1	2			
검찰실무1	2-2	2			
고려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	
		법문서작성	2-1	1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 in English)	1-1	1	
		모의재판	2-2	3	
		실습과정	3-1, 2	1	
	선택	국제법 모의재판	2-2	1	
		Legal Writing in English	2-1	1	
		Legal Aid Clinic	3-1, 2	2	
		국제영문계약실무	3-2	3	
		지적재산권소송실무	3-1	3	
		공정거래소송실무	2-1	3	
		노동소송실무	3-2	2	
		헌법소송실무	3-1	3	
		상사계약실무	3-2	3	
		형사소송실무	3-2	3	
		금융거래법실무	3-2(예정)	3	
		민사소송실무	3-2	3	
행정소송실무	3-2	3			
검찰실무	3-2	2			
동아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1-1	3	

대학명	과목명		개설 학년-학기	인정학점	비고
동아대	필수	법조윤리	2-1	3	
		법문서의 작성	2-2	3	
		모의재판	3-1	3	
		실습과정	3-2	2	
	선택	Leadership & Communication Skills for Lawyers	2-2	3	
		리걸클리닉	3-1	3	
로여링		3-2	3		
부산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	
		법조윤리	2-1	2	
		법무실습	2-1	1	
		법문서작성	2-2	1	
		모의재판	2-2	1	
	선택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1-2	2	
		수사절차실무	2-2	2	
		민사소송실무	3-1	2	
		형사공판실무	3-1	2	
		헌법소송실무	3-1	2	
		행정소송실무	3-1	2	
		국제계약문서작성	3-2	2	
		Legal Clinic	3-2	2	
서강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	
		법조윤리	1-1	2	
		법문서작성	1-2	1	
		모의재판	2-2	1	
		실습과정	2-2	1	
	선택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2-1	3	
		민사소송실무1(재산법)	2-1	3	
		기업라이선스실무	2-계절(하)	3	
		민사소송실무2(채권/불법행위법)	2-2	3	
		공법실무	2-2	3	
		소비자법의 이론과 실무	2-2	3	
		검찰실무	2-2	2	
		국제소송실무	2-계절(동)	3	
		민사소송실무3(가사소송)	3-1	3	
		기업인수합병실무	3-1	3	
		기업법무실무	3-1	3	
		형사소송실무	3-2	3	
		환경분쟁과 소송실무	3-2	2	
		형사조정 이론과 실무	3-2	2	
		서울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1-1
법조윤리	2-1			1	
법무실습	2-2			1	
모의재판	2-2			1	
선택	민사실무기초		2-1	3	
	형사실무기초		2-1	3	

대학명	과목명		개설 학년-학기	인정학점	비고
서울대	선택	검찰실무1	2-2	2	
		형사재판실무	2-2	3	
		민사재판실무	3-1	3	
		특허실무	3-1	3	
		검찰실무2	3-1	2	
		헌법재판실무	3-2	3	
		공법실무	3-2	3	
		국제투자실무	3-2	3	
		저작권실무	3-2	3	
		형사변호실무	3-2	3	
		노동소송실무	3-2	3	
서울시립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1-1	1	
		실습과정1(P/F)	2-1, 2	1	
		법조윤리(P/F)	2-1	2	
		법문서의 작성	2-2	2	
		모의재판(P/F)	3-1	1	
	선택	실습과정2(P/F)	2-1	1	
		실습과정3(P/F)	2-2	1	
		검찰실무	2-2	2	
		형사소송실무	2-2	2	
		민사실무	3-1	2	
성균관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2-1	1	
		법조윤리	2-1	1	
		모의재판	3-1	1	
		실무수습(엑스텐십)	3-1	1	
	선택	검찰실무1	2-2	2	
		법정토론과 스피치	2-2	1	
		사실인정론	2-2	2	
		행정소송실무	2-2	3	
		형사소송실무	2-2	3	
		검찰실무2	3-1	2	
		고급법문서작성	3-1	1	
		민사소송실무	3-1	3	
		민사집행법	3-1	3	
법률클리닉	3-2	2			
아주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1-1	1	
		법문서의 작성	2-1	2	
		법조윤리	2-1	2	
		실습과정	2-2	2	
		모의재판(민사)	2-2	1	
		모의재판(형사)	3-1	1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아주대	선택	자치입법실무	2-2	2	
		민사변호실무	2-2	3	
		보전처분 소송실무	2-2	2	
		형사변호실무	2-2	3	
		기업법 상담실무	2-2	2	
		형사재판실무	2-2	2	
		검찰실무1	2-2	2	
		공법소송실무	3-1	3	
		중소기업법무 실습과정	3-1	2	
		검찰실무2	3-1	2	
		형사증거법과 증거조사실무	3-1	2	
		기업소송실무	3-1	2	
		국제통상 소송실무	3-1	2	
		중소기업 세무관리실무	3-1	2	
		중소기업 노무컨설팅실무	3-1	2	
		민사재판실무	3-2	2	
		현대기업범죄의 이론과 소송실무	3-2	2	
		소송실무	3-2	2	
		산업피해자 구제심결실무	3-2	2	
		국제거래와 조세실무	3-2	2	
가사소송실무	3-2	2			
외국인노동자의 권리구제절차 실무	3-2	2			
조세소송실무	3-2	2			
연세대	필수	법률정보조사와 법률문장론	1-1	1	
		법조윤리	2, 3-1	1	
		법문서작성	2-2	2	
		모의재판	3-1	1	
		실무수습	2, 3-상시	1	
	선택	공법응용	2, 3-2	3	
		민사법응용	2, 3-1	3	
		형사법응용	2, 3-1	3	
		상사법응용	2, 3-2	3	
		공공쟁송실무	2, 3-1	3	
		민사소송실무	2, 3-2	3	
		형사소송실무	2, 3-1	3	
		국제계약실무	2, 3-2	2	
		상품,기술,자본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과 실무	2, 3-1	3	
		기업의 준법감시프로그램	2, 3-1	3	
금융과 조세실무	2, 3-2	3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실무	2, 3-1	2			
영남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2-1	1	
		법문서작성론	2-1	1	
		실무실습	2-1,2	1	
		모의재판	2-2	1	
	선택	민사법실무	3-1	3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영남대	선택	실무행정소송	3-1	3		
		형사법실무	3-1	3		
원광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2		
		법조윤리	1-1	2		
		법문서작성	2-2	2		
		모의재판	3-1	1		
		실습과정	3-1(A), 2(B)	1		
	선택	증인신문의 기술	3-1	1		
		법정스피치론	3-1	1		
		사실인정론	3-1	1		
		협상론	3-2	1		
이화여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1-1	1		
		법문서의 작성	1-1	2		
		모의재판	1-2	1		
		법조윤리	1-2	2		
		현장실습	2-1, 2	2		
	선택	행정쟁송실무	2-1	3		
		검찰실무1	2-2	2		
		형사재판실무	2-2	3		
		법률구조실무	2-2	3		
		검찰실무2	3-1	2		
		의료민사소송실무	3-1	2		
		민사재판실무	3-1, 2	3		
		민사변호사실무	3-2	3		
		형사변호사실무	3-2	2		
		노동·사회보장 소송실무	3-2	3		
		조세쟁송실무	3-2	3		
		특허소송실무	3-2	2		
		의료형사소송실무	3-2	2		
		국가소송실무	3-2	2		
		인하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1-1	1
법조윤리	2-1			2		
법문서의작성	2-1			2		
특허모의재판	택 1			2-2	1	
헌법모의재판				2-2	1	
민사모의재판				2-2	1	
형사모의재판				2-2	1	
법조실무연습	3-1			2		
선택	지적재산 라이선싱실무		2-1	3		
	물류행정법		2-2	3		
	형사실무		2-2	3		
	특허명세서 작성과 청구범위 해석		2-2	3		
	헌법세미나		2-2	3		
	검찰실무1		2-2	2		
	가사소송실무		2-2	3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인하대	선택	국제거래법	3-1	3	
		민사실무	3-1	3	
		환경법세미나	3-1	3	
		미국특허법제와 실무	3-1	3	
		해외투자법	3-1	3	
		행정소송실무	3-1	3	
		저작권 소송실무	3-1	3	
		물권법세미나	3-1	3	
		검찰실무2	3-1	2	
		프랜차이즈법과 실무	3-2	3	
		물류실무	3-2	3	
		ADR(대체분쟁해결)실무	3-2	3	
		기업법세미나	3-2	3	
		외교와 국제법실무	3-2	3	
		산업재산권 소송실무	3-2	3	
		물류사례연구	3-2	3	
		불법행위법 세미나	3-2	3	
		행정법 세미나	3-2	3	
형사법 세미나	3-2	3			
전남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2	1	
		법문서작성	1-2	1	
		법조윤리	2-1	1	
		실습과정	2-2	1	
		모의재판	2-2	1	
	선택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 Practice	2-1	2	
		Chinese Business Law & Practice	2-2	2	
		민사집행 및 보전실무	3-1	3	
		형사실무	2-2	3	
		조세쟁송실무	3-1	3	
		노동분쟁실무	3-2	3	
		민사재판실무	3-2	3	
		가사소송실무	3-2	3	
공법실무	3-1	3			
환경분쟁실무	3-2	3			
전북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	
		법조윤리	2-1	1	
		법문서작성	2-2	1	
		모의재판	3-1	1	
		실습과정1	3-1	1	
	선택	법률가와 커뮤니케이션	1-1	3	
		검찰실무1	2-2	2	
		민법연습1	2-2	3	
		법률가와 협상	2-2	3	
		형법연습	2-2	3	
		가족법연습	3-1	2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전북대	선택	검찰실무2	3-1	2	
		국제거래법실무	3-1	2	
		노동법연습	3-1	3	
		민법연습2	3-1	3	
		민사소송법연습	3-1	3	
		민사소송실무	3-1	3	
		사회법연습	3-1	3	
		중국 외상투자 기업법실무	3-1	3	
		중국 조세법 총론 및 실무	3-1	3	
		행정소송실무	3-1	3	
		헌법종합연습	3-1	3	
		형사소송법연습	3-1	3	
		형사소송실무	3-1	3	
		회사법연습	3-1	3	
		경제법연습	3-2	2	
		국제법연습	3-2	3	
		노동법실무	3-2	3	
		민사법종합연습	3-2	2	
		보전소송실무	3-2	2	
		상사법종합연습	3-2	3	
		손해배상법실무	3-2	2	
		실습과정2	3-2	1	
		중국조세법 각론 및 실무	3-2	2	
지적재산권실무	3-2	2			
행정법종합연습	3-2	3			
형사법종합연습	3-2	3			
제주대	필수	법정보조사론1	1-1	1	2009 학년도 입학자 적용
		법문서작성론1	1-1	1	
		법정보조사론2	1-2	1	
		법문서작성론2	1-2	1	
		법조윤리	2-1	1	
		모의재판	3-1	1	
		법률실습	3-1	1	
	선택	국제투자실무	2-1	3	
		검찰실무1	2-2	2	
		법조실무론	2-2	2	
		국제계약실무	2-2	3	
		검찰실무2	3-1	2	
		행정쟁송실무	3-2	3	
		형사변호사실무	3-2	3	
		가사소송실무	3-2	3	
		민사변호사실무	3-2	3	
		지적재산권실무	3-2	3	
조세소송실무	3-2	3			
국제소송, 중재실무	3-2	3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제주대	필수	법정보조사론	1-1	1	2010 학년도 입학자 적용
		법문서작성론	2-2	1	
		법조윤리	2-2	1	
		모의재판	3-1	1	
		법률실습	3-1	1	
	선택	국제투자실무	2-1	3	
		검찰실무1	2-2	2	
		법조실무론	2-2	2	
		국제계약실무	2-2	3	
		검찰실무2	3-1	2	
		형사변호사실무	3-2	3	
		민사변호사실무	3-2	3	
		조세소송실무	3-2	3	
국제소송, 중재실무	3-2	3			
중앙대	필수	법정보조사	1-1	1	
		법조윤리	2-1	1	
		법문서작성	2-2	2	
		민사모의재판	2-2	1	
		형사모의재판	2-2	1	
		실습과정	2-1~3-2	1	
	선택	법률가를 위한 기업회계	1-1	3	
		English for Legal Practitioners	1-1	3	
		법률통계조사분석	2-1	2	
		법률 중국어	2-1	2	
		설득심리학	2-2	2	
		English Legal Writing & Research	2-2	3	
		형사소송실무	2-2	3	
		검찰실무1	2-2	2	
		민사클리닉	3-1	2	
		형사클리닉	3-1	2	
		공익클리닉	3-1	2	
		민사소송실무	3-1	3	
		검찰실무2	3-1	2	
		변호사실무(공법계)	3-2	3	
		변호사실무(민사법계)	3-2	3	
		변호사실무(형사법계)	3-2	3	
		협상론	3-2	3	
충남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1-1	2	
		법조윤리	2-1	1	
		모의재판	3-1	1	
		실습	3-1	1	
	선택	International Licensing & Negotiation	3-2	3	
		IP Infringement & Litigation	3-1	3	
		Patent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3-2	3	
		Trademark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3-1	3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충남대	선택	검찰실무 I	2-2	3	
		검찰실무 II	3-1	3	
		국제거래와 기업소송실무	3-2	3	
		기업소송의 법과 실무	3-2	3	
		남북경협과 상사분쟁해결	3-1	3	
		민사소송대리실무	3-2	3	
		민사재판실무	3-1	3	
		민사집행실무	3-2	3	
		민사특별절차실무	3-2	3	
		발명의 보호와 특허실무	3-1	3	
		특허법원과 소송	3-2	3	
		행정재판실무	3-2	3	
		형사실무종합	3-2	3	
		中国商事法和中国投资法律实务	3-2	3	
충북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1-1	2	
		법조윤리	1-2	2	
		법문서의 작성	2-2	2	
		모의재판	3-1	2	
		실습과정	3-2	1	
	선택	민사소송법연습	2-1	3	
		어음수표법 이론과 실무	2-1	3	
		문화법의 이론과 실무	2-2	3	
		민사소송실무	2-2	3	
		공판절차론	2-2	3	
		검찰실무1	2-2	2	
		손해배상실무	3-1	3	
		민법사례연습	3-1	3	
		행정소송 세미나	3-1	3	
		헌법응용연습	3-1	3	
		부동산법실무	3-1	3	
		산업재산권심사실무	3-1	3	
		행정법판례 세미나	3-1	3	
		상사법연습	3-1	3	
		검찰실무2	3-1	2	
		임상실습	3-2	1	
		행정법사례연습	3-2	3	
		재산법판례 세미나	3-2	3	
		특수불법행위 세미나	3-2	3	
		상사계약실무	3-2	3	
		생명과학 특수문제 세미나	3-2	3	
		특허소송실무	3-2	3	
		Seminar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3-2	3	
		민사종합연습	3-2	3	
		공법종합연습	3-2	3	
형사종합연습	3-2	3			

대학명	과목명		개설학년 -학기	인정학점	비고
충북대	선택	회사법소송실무	3-2	3	
한국외국어대	필수	법률정보조사	1-1	1	
		법문서작성	1-2	1	
		법조윤리	2-1	1	
		모의재판(민사)	2-2	1	
		모의재판(형사)	2-2	1	
		클리닉(민사)	3-2	1	
		클리닉(형사)	3-2	1	
		클리닉(국제법무)	3-2	1	
		클리닉(외국인인권)	3-2	1	
		엑스텐십(법원실무)	3-2	1	
		엑스텐십(검찰실무)	3-2	1	
		엑스텐십(변호사실무)	3-2	1	
		엑스텐십(전문기관실무)	3-2	1	
	선택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2-1	2	
		부동산등기법	2-2	2	
		국제협상론	2-2	2	
		변호사 형사실무	3-1	2	
		변호사 민사실무	3-1	2	
		담보거래 실무	3-1	2	
		국제금융거래실무	3-1	2	
		국제지적재산권 전략의 법과 실무	3-1	2	
		미국법실무	3-2	2	
		EU법실무	3-2	2	
		일본법실무	3-2	2	
		중국법실무	3-2	2	
		러시아법실무	3-2	2	
		인디아법실무	3-2	2	
중남미법실무	3-2	2			
중동법실무	3-2	2			
한양대	필수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문서의 작성	1-1	2	
		법조윤리	2-1	2	
		모의재판	2-2	2	
		실습과정	3-1	2	
	선택	가족법실무	2-2	2	
		형사법실무	2-2	2	
		민사법실무1	2-2	2	
		검찰실무1	2-2	1	
		법률상담	3-1	1	

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였으나,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 평가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로 각 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우수한 법조인 양성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1) 법률 내용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27조),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두며, 평가위원회는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②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8조).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33조). 또한 평가결과는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35조).

2)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한편,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하는데, ①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②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③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④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⑤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으로 한다(법 제29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법 제30조).

(2) 평가위원회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34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을 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③ 공인회계사, ④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현지조사단은 평가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에서 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③ 공인회계사 1명, ④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3) 사무 보조 기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6조).

3) 평가기준

(1) 근거 법령

평가위원회는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② 적절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기능을 수행하는데(법 제28조), 교육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34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2) 평가기준 내용

위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2010. 6. 30)을 받은 평가기준은 총 8개 평가영역, 29개 항목, 60개 세부 항목, 148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세부항목 및 지표는 생략).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적절성	5. 학생	5.3. 장학제도
	1.2. 자체평가		5.4. 졸업생의 사회진출
2. 입학전형	2.1.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	6. 교육시설	6.1. 교육시설 일반
	2.2. 입학자격 및 선발		6.2. 필수 기본시설의 확보
3. 교육과정	3.1. 교육과정 편제		6.3.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7. 교육연구지원	7.1. 재정 조달계획의 적절성
	3.3. 수업의 효율성		7.2. 재정 분배의 적절성
	3.4. 학사관리의 엄정성		7.3. 행정 지원
	3.5. 실무필수과목의 적절성과 충실성		7.4. 연구소 지원
	3.6. 국제화 및 특성화		7.5. 리걸클리닉 지원
4. 교원	4.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7.6. 규정 제정 및 위원회 설치
	4.2. 교수개발 지원	8. 관련 학위과정	8.1. 법학사학위 과정의 폐지
	4.3. 전임교원 연구성과		8.2. 관련 학위 과정운영
5. 학생	5.1. 학생상담 및 지도		8.3. 기존 법학부 과정의 교육
	5.2. 학생복지		

4) 평가인증 유형 및 판정기준

구분	판정기준	인증기간 및 추가 조치사항
인증	8개 영역 모두 적합(Pass)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인증 * '적합'은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의미함.	• 인증 유효기간: 5년
인증 유예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영역은 6개 이상이고, 부적합(Failure)으로 판정을 받은 평가영역은 2개 이하인 경우 * 단,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평가영역이 1년 이내 단기간 개선이 가능해야 함.	• 1년 이내 미충족 사항을 개선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 후 추가평가 실시 • 추가평가 결과 평가 인증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잔여기간 인증
재평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영역 3개 이상이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 평가영역 2개 이하가 부적합으로 판정받았으나,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유예 판정을 받고 1년 이내 개선을 하지 못한 경우	• 부적합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안에 재평가 실시

5) 평가일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일정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2009년)부터 4년이 되는 해, 즉 2012년에 최초의 (정기)평가가 실시되고(시행령 제18조 제1항), 그로부터 5년 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평가가 실시되는 해부터 2년 전마다 각 대학원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최초의 자체평가 실시 연도는 20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이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기간을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였으며, 각 대학원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담당자 직무연수회 DVD 배포, 자체평가업무 평가편람의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 3호).